

#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구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기간 내에 토지조사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 1. 사업개요

가. 공사명: 『구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나. 사업위치

- 구산천: 현산면 황산리 산40-117 ~ 황산리 122-1 일원

다. 사업규모

- 구산천: 축제공( $L=2,137\text{km}$ ), 호안공( $L=2,137\text{km}$ ), 교량공(2개소)

라. 사업기간: 2024. 2. ~ 2026. 9.

마. 시행자: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불임2” 토지 목록 참조

다. 출입기간: 2024. 2. ~ 사업 종료시까지

## 3. 편입토지

가. 『구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 일체

※ “불임” 토지 목록 참조

※ 편입면적 및 물건 등은 확정 측량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나. 토지 및 물건조사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해남군 홈페이지(<https://www.haenam.go.kr>) 고시·공고란 참조

#### 4.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해남군 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

- 주 소: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우편번호:59028)
- 전화 및 팩스: ☎ 061-530-5495 / FAX: 061-530-5589

#### 5.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4. 2. 20. ~ 2024. 3. 5.(15일간)

- 가. 열람방법은 열람 기간 중 물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남군 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으로 우편 발송(등기우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59028)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7층 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

-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시간: 열람 기간 내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외)

#### 6.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 · 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토지 소유자의 감정 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
- 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9조)
- 라. 개인별 보상 대상 시기,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개별 통지) → 협의(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
-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8. 기타사항

- 가. 보상 대상 물건조서는 개인 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주소·거소·소유자 불명 등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하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530-5495)
- 바. 기타사항은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재난관리팀(☎061-530-54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서 1부.  
2.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부.

<input type="checkbox"/> 권리관계 <input type="checkbox"/> 토지등 누락 <input type="checkbox"/> 규격,수량 <input type="checkbox"/> 주소변경 <input type="checkbox"/> 가격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서						
1. 제 목						
2. 사업의 종류		구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의 견						
5.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 .						
의견 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해남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불임 2>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사업명: 구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추천 평가업자

평가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 ## □ 편입토지 목록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비고

상기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 ▣ 토지 소유자

- 성명: (자필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연락처:

**붙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1부. 끝.

해남군수 귀하